

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에 의거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(이하 “협동과정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학위과정)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- 제3조(학과설치) ① 협동과정의 학과설치는 일반학위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과가 서로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 협동과정에 설치하는 학과는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학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협동과정의 학과 설치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조(입학 및 전형절차) 협동과정의 입학 및 전형절차는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
- 제5조(교과목 개설) 제3조에 의하여 협동과정을 설치한 학과는 그에 따른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학위논문 및 학위수여) ① 학위논문의 지도는 학과간 공동 지도교수제로 할 수 있으며, 그 인원은 2인으로 한다.
- ② 학위청구 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8조(대학원위원회 보고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과 제반 규정 및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